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35
----------	---------

발의연월일: 2010. 9. .

발 의 자: 류영수 · 강창남 · 강철우
안철우 · 조선제 · 조기원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의원
(10인)

1. 제안이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하고,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시기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증인 선서의 방식 및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등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나.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추가하되, 출자·출연법인에 대하여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로서 군의 출자 또는 출연

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4호·제6호 신설).

라.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함

-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함

마.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한 준용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변경함(안 제9조제5항).

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을 의회소관 조례인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9조의3제3항).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42조, 제146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라. 기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으로,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거창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절차 기타”를 “절차와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례회 기간중”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로, “승인을 얻어”를 “승인을 받아”로, “행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승인하거나”를 “승인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승인된 때에는”을 “승인되면”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이를 통지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조사를 행할”을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을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으로, “조사를 시행할”을 “조사를 하게 할”로,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은”을 “의회는”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하게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하게 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를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를 승인하거나”를 “승인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승인된 때에는”을 “승인되면”으로, “즉시”를 “지체 없이”로, “이를 통지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의원이”를 “의원은”으로, “조사를 함에 있어”를 “조사를 할 때에”로,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으로, “사무를 제외한다”를 “사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사무에도 해당하면”으로, “조사함에 있어서”를 “조사할 때에”로 한다.

4.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무에 한한다”를 “사무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① 감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7조 중 “이의 검토 후”를 “이를 검토한 다음”으로, “연장 또는 단축”을 “연장하거나 단축”으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을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을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로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의2 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을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으로, “명시한”을 “밝힌”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를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본회의나 위원회”로, “금지시키거나”를 “금지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한 때에는”을 “요구하면”으로,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을 “승인을 받아 내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제9조제1항”으로,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거창군의회의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감사 또는 조사는”을 “감사나 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할”을 “피할”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을 “사유가 있으면”으로,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를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당해”를 “해

당”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을 “감사나 조사를”로,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를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를 “의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감사 또는 조사를”을 “감사나 조사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을 “의원은 감사나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으로, “저해되거나”를 “방해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 및 사무보조자”를 “의원과 사무보조자”로, “감사 또는 조사”를 “감사나 조사”로,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으로 하여금”을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이나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이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

제16조 중 “주의의무에”를 “주의 의무를”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에”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를 “감사 또

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u>거창군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u>절차</u>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u>거창군의회</u> 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 <u>절차</u> 와 <u>그 밖에</u> ----- -----
제2조(감사) ① 의회는 <u>군의 행정사무</u> 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게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u>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u>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u>거창군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는 <u>거창군</u> (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u>행정사무감사</u> (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u>특별위원회</u> 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u>정례회 기간중</u> 7일 이내로 실시하되, <u>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u> 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u>제2차 정례회 기간 중</u> ----- ----- <u>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u>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승인을 받아 ----- ----- 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 ----- <u>적어야</u> -----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 ----- <u>승인하거나</u> ----- -----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u>지체없이</u>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 <u>승인되면</u> <u>지체 없이</u> ----- <u>통보하여야</u> -----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u>군의 행정사무중</u> 특정 사안에 관하여 <u>조사를 행할</u> 수 있다.</p>	<p>제3조(조사) ① ----- ----- ----- <u>사무 중</u> ----- ----- <u>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u>를 <u>할</u>-----.</p>
<p>② <u>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u>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u>조사를 시행할</u> 위원회 등을 <u>기재하여</u>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u> ----- ----- <u>조사를 하게 할</u> ----- <u>적어</u> ----- -----.</p>
<p>③ <u>의장은</u>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u>지체없이</u> 본회의의 의결로 <u>조사를 시행할</u>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③ <u>의회는</u> ----- <u>지체 없이</u> ----- <u>조사를 하게 할</u> <u>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하게 할</u>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p>
<p>④ 의회가 <u>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u>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 --- <u>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경우</u> <u>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있으면</u> --- -----.</p>
<p>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u>기재한</u>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u>제출하여 승인을 얻어</u> 조사를 실시한다.</p>	<p>⑤ ----- ----- ----- <u>적은</u> ----- ----- <u>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u> -----.</p>
<p>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u>이를 승인하거나</u> 반려한다.</p>	<p>⑥ ----- ----- <u>승인하거나</u> -----.</p>
<p>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u>이를 통지하여야</u> 한다.</p>	<p>⑦ ----- <u>승인되면 지체 없이</u> ----- <u>통보하여야</u> --.</p>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보조자) <u>의원이</u>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사무보조자) <u>의원은</u> ----- 조사를 할 때에 ----- 필요하면 ----- -----.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u>당해 지방자치단체</u> 2. <u>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u> 3. (삭제 1994.9.12 조례 제1331호) <신 설> 4. <u>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u> <신 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각 호 -----. 1. <u>군</u>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 <u>군</u> ----- ----- 3. (현행과 같음) 4. <u>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u> 5. <u>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u> ----- ----- <u>사무는 제외한다</u> ----- ----- <u>경우만</u> ----- <u>해당한다.</u>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u>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u>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u>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이를 감사 또는 <u>조사함에 있어서</u>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u>사무에도 해당하면</u> ----- ----- <u>조사할 때에</u> ----- -----.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②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u>사무에 한한다</u>. 다만, 의회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u>있을 경우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p> <p>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p> <p>③ ----- ----- <u>사무만 해당한다.</u> ----- ----- ----- ----- <u>있는 경우는</u> ----- 제외한다.</p>
<p>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u>이의 검토 후</u>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u>연장 또는 단축</u>할 수 있다.</p>	<p>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 ----- <u>이를 검토한 다음</u> ----- ----- <u>연장하거나 단축</u>-----.</p>
<p>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u>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u>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u>아니된다</u>.</p>	<p>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 ----- <u>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u> ----- ----- ----- <u>아니 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전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인인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 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u>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u> 알려야 한다.</p> <p>⑤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u>형사소송법</u>」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 ----- ----- <u>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u> ----- -----.</p> <p>⑤ ----- 「<u>국회에서</u>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p>
<p>제9조의2(대리 출석·답변 등) 군수는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u>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9조의2(대리 출석·답변 등) ----- ----- <u>관계</u>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 ----- <u>밝힌</u> ----- <u>본회의</u> 이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 ----- <u>알려야</u> -----.</p>
<p>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p> <p>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u>응하지</u>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u>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u>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u>요구한 때에는</u>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u>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u>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p>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p> <p>① ----- ----- <u>따르지</u> ----- ----- <u>본회의나</u> <u>위원회</u>----- 금지하거나 ----- -----.</p> <p>② ----- ----- <u>요구하면</u> ----- 승인을 받아 내줄 -----.</p> <p>③ <u>제9조제1항</u>----- ----- <u>의회나</u>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u>거창군의회의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u>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u>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u>감사나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 ----- <u>그 밖의</u> -----.
제11조(공개의 원칙) <u>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11조(공개의 원칙) <u>감사나 조사는</u> ----- <u>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u> <u>위원회</u> ----- -----.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 <u>피할</u> ----- ----- <u>사유가 있으면</u> ----- ----- <u>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u> ----- -----.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u>당해</u> 의원의 <u>감사 또는 조사를</u> 중지시키고 <u>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u>	② ----- ----- <u>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u> ----- <u>해당</u> ----- <u>감사나</u> <u>조사를</u> ----- <u>다른 의원에게</u> <u>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u>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u>당해</u> 의원의 <u>이의가</u>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u>이를 결정한다.</u>	③ ----- <u>해당</u> ----- ----- <u>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u> <u>에 따른다.</u>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u>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u>	④ ----- ----- <u>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u> <u>조사위원회</u> ----- <u>감사나 조사를</u> -----.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주의 의무) ① <u>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u>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u>저해되거나</u>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 <u>의원 및 사무보조자는</u> <u>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u> 비밀을 <u>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u> 아니된다.</p>	<p>제13조(주의 의무) ① <u>의원은</u> <u>감사나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u> ----- ----- <u>방해되거나</u> ----- -----.</p> <p>② <u>의원</u>과 <u>사무보조자</u>--- <u>감사나 조사</u> ----- <u>알게 된</u> ----- <u>사유 없이 누설해서는</u> 아니 된다.</p>
<p>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u> <u>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u>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u> 의장에게 <u>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u> <u>지체없이</u>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u>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u> <u>기재하고</u> 그 중요 근거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p> <p>③ <u>의장은</u> <u>위원장으로 하여금</u> <u>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u> <u>중간보고를</u> 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u> <u>감사나 조사를 끝내면</u> <u>그 위원회</u>----- ----- ----- <u>지체 없이</u> ----- -----.</p> <p>② ----- ----- <u>적고</u> ----- <u>붙여야</u> --.</p> <p>③ ----- <u>위원장에게</u> ----- ----- -----.</p>
<p>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 <u>감사 또는 조사결과</u> <u>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u> <u>의회는</u> <u>그 시정을</u> <u>요구하고</u> <u>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u> <u>직접 처리함이</u> <u>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은 <u>군 또는 해당 기관에</u> <u>이송한다.</u></p> <p>③ <u>군 또는 해당 기관은</u> <u>제2항의</u> <u>규정에</u> <u>의하여</u> <u>시정 요구를</u> <u>받거나</u> <u>이송받은 사항</u>을 <u>지체없이</u> <u>처리하고</u> <u>그 결과</u>를 <u>의회에</u> <u>보고하여야</u> 한다.</p>	<p>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회는</u> <u>감사 또는 조사결과</u> <u>군이나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으면</u> <u>그 시정을</u> <u>요구하고,</u> <u>군이나 해당 기관에서</u> <u>처리하는 것이</u> <u>타당하다고</u> <u>인정되는 사항</u>은 <u>군이나 해당 기관으로</u> <u>이송한다.</u></p> <p>③ ----- <u>제2항에</u> ----- <u>따라</u> ----- ----- <u>지체 없이</u> ----- -----.</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u>주의의무</u>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u>거창군의회 회의규칙</u>」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제16조(징계) ----- ----- ----- ----- <u>주의 의무</u> ----- ----- 「<u>거창군의회 회의규칙</u>」으로 ----- -----.</p>
<p>제17조(준용규정)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u>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p>제17조(준용규정)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u>에 ----- ----- -----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09.10. 2] [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13, 일부개정]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
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
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
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
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
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위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51호, 2010. 3.12, 일부개정]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